

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[별지 제14호서식] <신설 2023. 8. 22.>

재활용부과금 [ ] 징수유예 [ ] 결정 통지서  
[ ] 분할납부 [ ] 거부결정  
[ ] 징수유예 기간 연장

관리번호

성명			생년월일			사업자등록번호			
주소				전화번호					
상호 또는 명칭									
사업장 소재지									
사업의 종류				종목					
재활용부과금의 내용						징수유예(기간 연장) 금액			
연도(분기)	납부번호	납부기한	금액						
징수유예(기간 연장) 기간		20 . . .부터 20 . . .까지							
분할납부의 기한 및 금액									
횟수	연도(분기)	납부번호	분할납부기한	분할납부금액					
거부결정 사유									
<p>귀하가 20 . . . 신청한 재활용부과금의 징수유예, 분할납부 또는 징수유예 기간 연장 신청에 대하여 「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19조제5항,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2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의3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결정 또는 거부결정하였음을 통지합니다.</p> <p>이 통지서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「행정심판법」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「행정소송법」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.</p>									
							년	월	일
한국환경공단 이사장						<div style="border: 2px solid orange; padding: 5px; display: inline-block;"> <b>적인</b> </div>			